

가조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(제2종지구단위계획)결정(안)의견청취의견

의안번호
46

제안년월일 : 2004. 11.

제안자 : 거창군수

1. 제안사유

- 국민의 생활 패턴과 여가 형태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레크레이션 및 관광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종합관광휴양지 및 체육시설을 공급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함.
- 타 관광지와 차별화된 특색 있는 관광지개발을 통한 거창의 지명도 제고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유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함.

2. 주요골자

가. 명칭 : 가조 종합관광지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

나. 입안내용

○ 개발진흥지구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치	면적(m ²)	최초 결정일	비고
신설	1	개발진흥 지구	관광휴양 개발진흥 지구	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산46-1 일원	3,179,300	-	

○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m')		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설	1	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	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산46-1 일원	-	증)3,179,300	3,179,300	

3. 주민의견청취

가.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: 2004.09.06 ~ 2004.09.24(18일간)

나. 공고방법

○ 도내 2개사 이상의 일간신문 게재(경남신문, 경남일보)

○ 게시판 게시공고 및 군 홈페이지 게재

다. 의견청취결과 : 의견 없음

4. 근거법령

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

[illegible]

● 가조온천에서 바라본 대상지 전경

② 대상지 동측 전경

① 대상지 남서측 전경

③ 대상지 남측전경



